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5. . . (제 회)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공무원의 공직가치 확립 및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종전의 교육훈련보다 종합적인 관점의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기능을 공공·민간 교육훈련·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및 연구·개발·컨설팅 등으로 확대하고,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지원하며, 교육훈련기관 간 상호 개방·공유·협력과 협의체 운영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사전학습 과제 부여 및 국외훈련 관리 강화, 전문교육훈련과정 인증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본교육훈련 등의 목표 수정(안 제7조)

국가공무원의 공직가치 확립 및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기본교육훈련은 공직가치 확립 및 역량제고로, 전문교육훈련은 전문성 강화로 목표를 수정함.

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기능 확대(안 제4조)

중전의 중앙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 인재개발의 구심점으로서 국가 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개편되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평가 기능을 국내외 인재개발 동향 및 공직가치·리더십, 역량개발 등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개발·보급 및 컨설팅 등으로 구체화하고, 외국공무원교육·인재개발 관련 국제협력과 우수 교육 프로그램 및 우수 강사 경진대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자기개발 학습 의무화(안 제7조, 제8조의2)

법에서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 의무 및 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종전 교육훈련의 구분에서 자기개발 학습을 별도의 인재개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자기개발계획 계획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라. 연구모임 활성화(안 제8조의3)

법에서 규정하는 연구모임 활동의 지원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모임의 운영실적 및 성과를 확인하고 운영을 지원하여야 하고, 인사혁신처장은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공유하는 등 각 기관의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마. 교육훈련기관 간 상호 개방·공유·협력(안 제8조, 제9조)

교육품질 향상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 교육훈련기관 네트워크화 및 기관 간 상호 개방·공유·협력을 위하여, 교육과정 개방 및 공동 개발·활용, 이러닝 콘텐츠 지원 및 우수강사 풀 제공,

교육과정 및 시설의 민간 개방 등의 근거를 마련함.

바. 교육훈련기관 간 협의체 운영 구체화(안 제14조의2)

법에서 인사혁신처장에게 교육훈련기관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반영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원활한 협의체 운영을 위해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고 협업 촉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 인재개발정보시스템 구축(안 제14조의3)

인재개발 정보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관련 정보의 연계 및 공유를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전자화된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아. 특정분야에 대한 객원교수 위촉(안 제21조)

공직가치 등 특정 교육훈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객원교수로 위촉하여 강의, 연구, 분임지도 등의 지도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자. 신입공무원 합숙교육 및 멘토제 도입(안 제11조)

신입공무원 교육의 효과성 제고 및 교육 몰입도 향상을 위하여, 신입공무원 교육 시 합숙교육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선배 공무원을 멘토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차. 사전학습 과제 부여(안 제8조)

본 교육의 효과성 제고 및 학습 마인드 고취를 위하여,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 별도의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카. 국외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안 제38조의2, 제39조)

충실한 국외훈련의 수행과 국외훈련 결과의 정책 등과의 연계·활용을 위해 국외훈련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훈련 성과에 따라 소요경비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타. 교육과 인사관리와의 연계(안 제18조)

교육과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가 연계될 수 있는 교육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방법을 인재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파. 용어의 변경·정비 등

1) 직장훈련 계획 및 운영 보완(안 제28조, 제29조)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장훈련이 인재개발 취지에 부합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정신교육’은 ‘공직가치 교육’으로,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은 ‘전문성 강화’로 직장훈련의 내용을 수정함.

2) 위탁훈련 소요경비 산정 보완(안 제36조의2)

의무위반시 반납해야 하는 국내외 위탁훈련의 소요경비 산정 대상 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을 ‘국내외 공공·민간기관’으로, ‘국가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을 ‘기관’으로 수정함.

3) 교육운영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훈련 실시(안 제25조)

중전의 교수요원에 대한 교육을 교육운영담당자로 확대하여 교육운영과 관련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4)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인증 및 지정(안 제30조)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전문교육훈련기관교육과정을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취지에 적합하게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변경하고, 인사혁신처장이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5) 기타 용어 변경(법령제명 및 안 제1조 등 10개 조문)

‘교육훈련’을 ‘인재개발’로 변경하는 등 인재개발의 개념, 목적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12. 11. ~ 12. 16.)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교육훈련지침)”을 “(인재개발지침)”으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교육훈련”을 “인재개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교육훈련”을 “인재개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교육훈련”을 “인재개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훈련”을 “인재개발”로, “교육훈련계획”을 “인재개발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발전을 위하여 중앙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하여금”을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발전 및 공공·민간 교육훈련·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내외 인재개발 동향 연구·분석 및 공유
2. 공직가치·리더십, 역량개발 등 교육훈련의 자료·교재·기법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및 컨설팅
3. 이러닝 콘텐츠 개발·보급 및 운영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4. 외국공무원교육 및 인재개발 관련 국제협력
5. 우수 교육 프로그램과 우수 강사 경진대회 실시 및 포상
6. 교수요원의 양성 및 능력 향상
7.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3항 중 “공무원교육훈련”을 “공무원 인재개발”로 한다.

제5조 중 “교육훈련”을 “인재개발”로, “교육훈련계획”을 “인재개발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교육훈련담당 공무원)”을 “(인재개발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훈련”을 “인재개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훈련계획”을 “인재개발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훈련”을 “인재개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훈련”을 “인재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훈련”을 “인재개발”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교육훈련의 구분)”을 “(인재개발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인재개발은 기본교육훈련·전문교육훈련·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한다.

제7조제2항 중 “능력과 자질을 배양”을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역량을 제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을 “전문성을 강화”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훈련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의 명에 의하여 또는 공무원 스스로 하는 직무 관련 학습·연구 활동을 포함한”을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자기개발 학습은 공무원이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하는 학습·연구활동을 말한다.

제8조의 제목 “(교육훈련의 방법)”을 “(인재개발의 방법)”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교육훈련”을 “인재개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훈련을”을 “인재개발을”로, “시설”을 “원격강의시스템 등 제반시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별도의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의2(중전의 제11조의4)의 제목 “(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을 “(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으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연구모임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모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적 및 성과를 확인하고 연구모임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 소속 연구모임의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공유하는 등 각 기관의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교육훈련의 상호 위탁)”을 “(교육훈련의 상호 위탁 및 개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품질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협업·개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을 전 공무원에게 개방
2. 공직가치·리더십 등 공통 역량 관련 과정 공동 개발·활용
3. 교육용 이러닝 콘텐츠 지원 및 우수강사 풀 제공
4. 교수요원의 상호 활용
5. 강의실, 분임실, 체육시설 등 유휴 교육훈련용 시설의 공동 활용
6. 교육과정 및 시설의 민간 개방
7. 기타 각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등

제11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합숙교육 및 이러닝 등을 활용하여 신규채용

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며, 이를 위한 제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신규채용된 공무원에 대한 멘토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2제1항 중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강화된 역량과 전문성”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본문 중 “교육훈련”을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육훈련의 내용 및 교육훈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및 교육훈련”을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과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한다.

제11조의4를 제8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실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기개발계획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2(종전의 제11조의4)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교육훈련의 평가)”를 “(인재개발의 평가)”로 하고, 제14

조제2항 중 “교육훈련”을 “인재개발”로, “공무원교육훈련”을 “공무원 인재개발”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공무원교육훈련기관 협의체의 운영)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협의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거나 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의3(인재개발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인재개발 정보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관련 정보의 연계 및 공유를 위해 전자화된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제목 “(교육훈련계획의 통보)”를 “(인재개발계획 등의 통보)”로 하고, 제15조제1항 중 “교육훈련계획”을 “인재개발계획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훈련”을 “인재개발”로, “교육훈련계획”을 “인재개발계획 등”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교육훈련 자료 등)”을 “(인재개발 자료 등)”으로 하고, 제16조 중 “교육훈련”을 “인재개발”로 한다.

제16조의2 중 “교육훈련”을 “인재개발”로 한다.

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교육훈련 이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에 따라 교육훈련 성적의 승진임용, 전보 등 인사관리 반영 방법을 제15조의 인재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정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분임지도 등 교육훈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25조의 제목 “(교수요원의 교육)”을 “(교수요원 등의 교육)”으로 하고, 제25조제1항 중 “사람”을 “사람 및 교육운영담당자”로, “지식·기술 및 소양을 습득”을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로, “교수요원과정”을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질 향상을”을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삭제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훈련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정신교육”을 “공직가치 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전문지식과”를 “전문성 강화를”로, “기술의 습득을 위한”을 “위한”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정보 등을 습득할 수”를 “전문성을 강화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기술·소양 등을 습

득”을 “역량을 제고”로 한다.

제30조의 제목“(전문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전문교육훈련과정의 인증 및 지정)”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중 “지정”을 “인증 또는 지정”으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전단 중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에서”를 “국내외 공공·민간기관에서”로, “국가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에서”를 “기관에서”로 한다.

제38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제34조의2의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성과에 따라 소요경비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영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공무원교육원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중앙공무원

교육원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른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행위 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영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5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③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④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⑥ 공무원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⑦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⑧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⑨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5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⑩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⑪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8호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⑫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5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⑭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제1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⑮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제2호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⑯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35조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⑰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5호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⑮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46조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⑯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⑳ 통일·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㉑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㉒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㉓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공무원 교육훈

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공무원 교육훈련법</u> 시행령	<u>공무원 인재개발법</u>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u>교육훈련지침</u>)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정책에 따라 다음 해의 <u>교육훈련</u> 에 관한 일반지침을 11월 15일까지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u>인재개발지침</u>)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정책에 따라 다음 해의 <u>인재개발</u> 에 관한 일반지침을 11월 15일까지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무원 인재개발기관(이하 “인재개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일반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반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u>교육훈련</u> 의 목표에 관한 사항	1. <u>인재개발</u> 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u>교육훈련</u> 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u>인재개발</u> 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인사혁신처장의 임무) ① 인사혁신처장은 <u>교육훈련</u> 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각급 행정기관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u>교육훈련 계획</u> 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인사혁신처장의 임무) ① - ----- <u>인재개발</u> ----- ----- ----- ----- ----- <u>인재개발 계획</u> 등----- -----.
② 인사혁신처장은 <u>각급 교육훈련기관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발전을 위하여 중앙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u>	② ----- <u>각급 교육훈련기관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발전 및 공공·민간 교육훈련·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u>
1. <u>공통과목의 개발·보급</u>	1. <u>국내외 인재개발 동향 연구·분석 및 공유</u>
2. <u>교육훈련의 자료·교재·기법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u>	2. <u>공직가치·리더십, 역량개발 등 교육훈련의 자료·교재·기법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및 컨설팅</u>
3. <u>교육훈련기관 간의 협조 및 민간 교육훈련기관과의 협력 증진</u>	3. <u>이러닝 콘텐츠 개발·보급 및 운영시스템 등의 공동활용</u>
4. <u>교수요원의 양성 및 능력 향상, 그 밖의 공통적 사항의 개</u>	4. <u>외국공무원교육 및 인재개발 관련 국제협력</u>

<u>선·발전</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5. <u>우수 교육 프로그램과 우수 강사 경진대회 실시 및 포상</u> 6. <u>교수요원의 양성 및 능력 향상</u> 7. <u>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③ ----- <u>공무원 인재개발</u> ----- ----- -----.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교육훈련의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일반지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u>교육훈련</u>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u>교육훈련계획</u> 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일반지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u>교육훈련</u>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u>교육훈련계획</u> 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 ----- ----- <u>인재개발</u> ----- ----- <u>인재개발계획</u> ----- -----.
제6조(<u>교육훈련담당 공무원</u>)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u>교육훈련</u> 관련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u>인재개발담당 공무원</u>) ① - ----- ----- <u>인재개발</u> ----- -----.
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기관의 <u>교육훈련계획</u> 수립의 총괄	1. ----- -- <u>인재개발계획</u> -----

2. (생략)

3. 소속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지도·감독

4. 관계 기관과의 교육훈련에 관한 협조

② 중앙행정기관 외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의 구분) ①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전문교육훈련 및 기타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교육훈련은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임용예정자(승진시험 합격자 및 승진심사 통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승진된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③ 전문교육훈련은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

-

2. (현행과 같음)

3. ----- 인재개발-----

4. ----- 인재개발-----

② -----

--- 인재개발-----.

제7조(인재개발의 구분) ① 인재개발은 기본교육훈련·전문교육훈련·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한다.

② -----

-----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역량을 제고-----.

③ -----

- 전문성을 강화-----

을 말한다.

④ 기타교육훈련은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훈련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훈련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의 명에 의하여 또는 공무원 스스로 하는 직무 관련 학습·연구 활동을 포함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신설>

제8조(교육훈련의 방법) ①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본교육훈련은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내용에 상응한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직장훈련이나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이로써 기본교육훈련을 갈음할 수 있다.

-----.

④ -----

----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의한 -----

-----.

⑤ 자기개발 학습은 공무원이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하는 학습·연구활동을 말한다.

제8조(인재개발의 방법) ① 인재개발-----

-----.

②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국가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기관의 교육과정이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④ ----- 인재개발을 ----- ----- 원 격강의시스템 등 제반시설---.
<신 설>	⑤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별도의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3(연구모임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모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적 및 성과를 확인하고 연구모임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 소속 연구모임의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공유하는 등 각 기관의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의 상호 위탁) ① ~ ③ (생 략)	제9조(교육훈련의 상호 위탁 및 개방)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인사혁신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품질 및 기관 운영의 호

	을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협업·개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을 전 공무원에게 개방
	2. 공직가치·리더십 등 공통역량 관련 과정 공동 개발·활용
	3. 교육용 이러닝 콘텐츠 지원 및 우수강사 풀 제공
	4. 교수요원의 상호 활용
	5. 강의실, 분임실, 체육시설 등 유휴 교육훈련용 시설의 공동 활용
	6. 교육과정 및 시설의 민간 개방
	7. 기타 각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등
제11조(신규채용자 등의 교육훈련) ① ~ ⑤ (생 략)	제11조(신규채용자 등의 교육훈련)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합숙교

	육 및 이러닝 등을 활용하여 신규채용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며, 이를 위한 제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신규채용된 공무원에 대한 멘토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2(교육훈련 이수자의 보직관리)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이수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교육훈련 이수자의 보직관리) ① ----- 강화한 역량과 전문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① 4급 이하(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2	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① -----		
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시간(이하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승진임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	
	② (생 략)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경우에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이하 "교육훈련기준시간"이라 한다)과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교육훈련의 운영		-----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및 교육훈련의 내용 등을 직렬별·직급별 또는 그 밖의 적정 기준에 따른 구분단위별로 달리할 수 있다.

제11조의4(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

<신 설>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책임이 부여되는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훈련의 평가) ① (생 략)

②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

영에 필요한 사항-----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과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

--.

제8조의2(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실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기개발계획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2항-----

-----.

제14조(인재개발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 결과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평가하거나,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평가한 내용을 종합분석하여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을 수립하는 데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설>

<신 설>

--- 인재개발 -----

----- 공무원 인재개발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공무원교육훈련기관

협의체의 운영)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협의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거나 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의3(인재개발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인재개발 정보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관련 정보의 연계 및 공유를 위해 전자화된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

	<u>관의 장에게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u>
제15조(교육훈련계획의 통보) ①	제15조(인재개발계획 등의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일반 지침에 따라 다음 해의 <u>교육훈련계획</u>을 수립하여 12월 15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u>교육훈련</u>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u>교육훈련계획</u>을 조정할 수 있다.	① ----- <u>인재개발계획 등</u>----- ----- <u>인재개발</u>----- ----- <u>인재개발계획 등</u>-----. ② ----- <u>인재개발</u>----- ----- <u>인재개발계획 등</u>-----.
제16조(교육훈련 자료 등) 인사혁신처장,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u>교육훈련</u> 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재 및 시청각 자료의 제작과 강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인재개발 자료 등) -----
	----- <u>인재개발</u>----- ----- ----- ----- ----- ----- -----.

제1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사혁신처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u>교육훈련</u>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 <u>인재개발</u> ----- ----- ----- ----- ----- -----.
제18조(교육훈련 성적의 평가 및 수료) ① ~ ④ (생략)	제18조(교육훈련 성적의 평가 및 수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u>교육훈련 이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 2에 따라 교육훈련 성적의 승진 임용, 전보 등 인사관리 반영 방법을 제15조의 인재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u>
제21조(교수요원의 운영 등) ① ~ ③ (생략)	제21조(교수요원의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u>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정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분임지도 등 교육훈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u>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5조(교수요원의 교육) ① 교육
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
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강의 및 교육운
영과 관련된 지식·기술 및 소
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수요
원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
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사
혁신처장이 수립하는 공무원위
탁교육훈련계획에는 교수요원
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위
탁교육훈련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교수요원 등의 상호 활용)
인사혁신처장은 교육훈련의 질
적 향상과 인력 및 경비의 절약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을 설치
·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교육훈련기관 간에 교수요원
과 교육훈련용 시설 및 기자재
등을 상호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직장훈련계획)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일반지

제25조(교수요원 등의 교육) ① -

사람 및 교육운영담당자-----

----- 전문성과 역량
을 강화----- 전
문교육훈련과정-----
-----.

② -----

-----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를 -----
-----.

제26조 삭제

제28조(직장훈련계획) -----

침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부 시책(施策)에 대한 교육
및 정신교육
2. (생 략)
3. 부서별·직무분야별 전문지
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한 전문
교육훈련
4. 5. (생 략)

제29조(직장훈련의 실시)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로 새로운 전문지식
과 기술·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
야 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시보
(試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 지도관을 임명하
여 해당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
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
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음 -----

-----.

1. -----
--- 공직가치 교육
2. (현행과 같음)
3. ----- 전문
성 강화를 위한 -----

4. 5. (현행과 같음)

제29조(직장훈련의 실시) ① ----

----- 전문성을 강화할
수 -----

-----.

② -----

----- 역량을 제고---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재개발과	
연락처	02-2100-6811